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순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 누수 발생시 위치와 관계없이 누수량 전체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이는 옥내 수도 설비의 관리 소홀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수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고스란히 일반 수도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수도사용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내 누수 발생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